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리안정실 설치·운영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5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31.
3. 회부연월일 : 2025.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심리안정실 설치·운영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공간을 “심리안정실”이라 약칭하고 있음(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8조의2(심리안정실 설치·운영)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내 별도의 공간(이하 “심리안정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인권침해 위기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안정실을 구축·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52개 학교에서 심리안정실(행동지원실 등)을 운영중이며 교육부는 2025년 200개, 2027년 300개로 심리안정실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임.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정서적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주변에 위기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행동은 교실 내에서 중재가 가능하지만 문제행동의 수위가 높아져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분리하여 안정적인 공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심리안정실은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것임.

아울러, 심리안정실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적 대처 외에 긴장과 피로가 쌓여 위기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학생에게 휴식과 긴장이완, 정서 환기를 제공함으로써 위기행동의 발생을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재 특수학교의 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해당 법령상 심리안정실의 명시적인 설치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설치기준이나 면적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심리안정실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안정실의 설치·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심리안정실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은 현재 특수학교에 대하여만 심리안정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여 일정 수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일반학교에도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심리안정실 설치·운영 의무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감하며 이견 없다는 입장임.

2. 심리안정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개정안은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정안 제28조의2에 따른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심리안정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 2.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특수교육교원과 직원(이하 “특수교육교직원”이라 한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u>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u> 2. <u>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u> 3. <u>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u> ③ <u>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u> ④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	---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은 「개인정보 보호법」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한 종류로, 일정한 공간에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CCTV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법 제25조²⁾)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한편,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³⁾제1항의 일반적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함⁴⁾.

따라서 교실과 같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개정안 제28조의2에 따른 심리안정실 역시 장애학생과 특수교육교원, 지원인력 등에게만 개방되는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참고

이에 개정안은 심리안정실에의 CCTV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안정실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⁵⁾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⁶⁾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동 규정 해석상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인 심리안정실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 학교구성원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동의한다면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도 심리안정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다수 특수학교에서 심리안정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음.

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심리안정실 내 CCTV 설치·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규정상 심리안정실 내 CCTV의 설치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 사항인 점, 「초·중등교육법」 및 하위법령에 정보 열람과 처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개별 학교시설 내 CCTV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할 입법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CCTV의 설치·운영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느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 심사에 앞서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CCTV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면서도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CCTV 설치비용 지원에 4억 9,000만원, 실태조사 비용 지원에는 매년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심리안정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정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7개 시·도교육청⁷⁾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사결정권과 인권,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학생과 교사의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하여 심리안정실의 운영 목적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 CCTV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인천, 대전, 전북

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개정안은 CCTV의 설치·관리,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의 열람 및 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4(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수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의3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안정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 제28조의4제1항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CCTV를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제3항),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의무(제4항), 영상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 금지(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⁸⁾에 따라 CCTV의 설치·운영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⁹⁾에 따라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은 특수학교 심리안정실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일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제3항),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제4항),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규정만을 적용 배제하려는 취지인지, 혹은 그 외에 관계 전문가와 학부모·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도록 하는 규정과 CCTV 설치 안내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등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은 CCTV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38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u><신설></u>	제38조(벌칙) ①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u><신설></u>	③ 제28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제38조의3(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1. 제28조의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u> <u>2.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u>
--	--

개정안의 벌칙 규정은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안 제1항), ①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와 ②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안 제2항),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안 제3항).

또한, 개정안은 심리안정실 CCTV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와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38조의3).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과태료의 수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규정 외에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벌칙 부과에 앞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5. 부칙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안정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186